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심상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580 발의연월일: 2021. 7. 19.

발 의 자:심상정・배진교・류호정

이은주 · 오영환 · 김민철

김주영 · 박상혁 · 이해식

송옥주 · 강은미 · 장혜영

진선미 • 이낙연 • 안규백

강민정 · 송석준 · 권영세

김예지 · 남인순 · 김민석

박덕흠 · 강선우 · 김철민

이용빈 · 진성준 · 서동용

민형배 · 양정숙 · 천준호

의원(3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시장이나 군수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,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 또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내

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까지로 한정되어 있어,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선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, 각 지자체의 이동지원센터간 통합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교통약자의 교통 접근권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

이에 시장·군수가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와 도지사가 운영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, 시·도지사는 생활권 및 인근 행정구역 간 특별교통수단의 환승·연계 이동을 통합관리하고 접수·배차 등의 통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도록 하였으며, 한편 특별교통수단 이용의 지역 간 차별 해소를 위해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, 국가 또는 도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뿐만아니라 운영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교통약자의 불편과 이동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6조 및 제16조의2제1항 등).

법률 제 호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 중 "설치할 수 있다"를 "설치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"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"를 "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지원할 수 있다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0항(종전의 제8항) 중 "이동지원센터"를 "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"로, "해당"을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"으로 한다.

③ 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·연계 이동을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·군수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- ⑥ 시·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생활권 또는 인근 행정구역 간 특별교통수단의 환승 및 연계 이동의 통합관리와 접수 및 배차 등 통합 서비스 체계 구축에 협력해야 한다.
- ⑧ 시장·군수 및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6조의2제1항 본문 중 "시장"을 "시·도지사 또는 시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해당"을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6조(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) 제16조(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) ① (생략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 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 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. 하여야 한다.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③ 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 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·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계 이동을 위하여 광역이동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·군수 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. 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교통수 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 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 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설치할 수 있다. 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 장·군수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광역이동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 ④·⑤ (생략) ④·⑤ (현행과 같음) ⑥ 시·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<신 설> 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생활

⑥ 국가 또는 도(道)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 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<신 설>

- ⑦ (생략)
- ⑧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16조의2(교통약자의 이동 지원) 제16조의2(교통약자의 이동 지원)
 -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교통약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-----

권 또는 인근 행정구역 간 특 별교통수단의 환승 및 연계 이 동의 통합관리와 접수 및 배차 등 통합 서비스 체계 구축에 협력해야 한다.

- ----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 센터의 설치·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 다.
 - ⑧ 시장·군수 및 도지사는 제2 항 및 제3항에 따른 이동지원 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⑨ (현행 제7항과 같음)
- ⑪ -----이동지원센 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더 및 광역이동지원센터-----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----.

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·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또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

례로 정한다.

②
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
바에 따라 해당